

감 정 평 가 서

건 명	라이블로베츠키 콜호즈 보스톡-1 조인트 스톡 컴퍼니(RYBOLOVETSKIY KOLKHOZ VOSTOK 소유물건 (2025타경4160(2))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감정서번호	WS251230-01



우 성 감 정 평 가 사 사 무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3, 907호(연산동,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TEL. 051-851-5557 FAX. 051-851-5547

(선박)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문 양 환





감정평가액	일십삼억오백사십오만이천원정 (₩1,305,452,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라이볼로베트스키 콜호즈 보스톡-1 조인트 스톡 컴퍼니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2025타경4160(2)		2026.01.06	2026.01.06	2026.01.08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선박	1척	선박	1척	-	1,305,452,000
		이	하	여	백	
	합 계					₩1,305,45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선박 감정평가명세표

선박명칭		보스톡 리퍼 (VOSTOK REEFER)		선박번호		(IMO)8403961 호출부호 : UHYB6		선 적 항		블라디보스톡 (Vladivostok)	
구 분		적재용량 및 수량		평 가 액				산 출 근 거			
				단 가		금 액					
선 체		1,068 G/T		1,103,000		1,178,004,000		4,000,000 × 0.2759(5/25)			
기 관		1,432 KW		89,000		127,448,000		500,000 × 0.178(5/20)			
의 장 품		34 점		-		선체에 포함평가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합 계						₩1,305,452,000.-					
선 박 의 내 용											
선 체	종 류	기선			선 형	-			척 도		
	용 도	냉동화물선			총 톤 수	1,068 G/T			길이 :	56.19 M	
	등 급	-			순 톤 수	351 N/T			폭 :	10.30 M	
	선 질	강			적화톤수	- DWT			높이 :	6.80 M	
	선 창	-			조 선 소	Japan Niigata			비 고		
	객 실	-			건조년월일	1984			-		
	승무원실	-			진수년월일	-					
	조 선 지	일본									
기 관	종 류	DIESEL ENGINE			기 통 수	6 CYL			제 작 소		
	실 마 력	1,432 KW			회 전 수	- RPM			NIIGATA		
	공칭마력	- KW			기 통 경	- m/m			제조일자 및 번호		
	형 식	6M 34AFT			행 정	- m/m			1984		
	속 력	- Knots			보조기계 및 기관의종류와 수량					비 고	
	추진기의 종 류 및 수 량	나선추진기 × 1기			선박의장품 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	

선박의장품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명칭 * 종류 구조*규격 형식*용량	제 재 제 작 번 일 자 호 자	수량	감 정 평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Anchor	미상	1	일괄	선체에 포함평가	
2	Windlass	미상	1			
3	Mooring Winch	미상	2			
4	Life Raft	미상	10			
5	Deck Crane	미상	1			
6	Rubber Fender	미상	6			
7	Steering System	미상	1			
8	Marine Radar	FURUNO 미상	1			
9	AIS Model: SI-70A	SAMYUNG 미상	1			
10	Doppler Speed Log	FURUNO 미상	1			
11	VHF Radio Model: FM-8500	FURUNO 미상	1			
12	GPS Compass	JRC 미상	1			
13	MF/HF Radio Model: SRT-3150	SAMYUNG 미상	1			
14	Echo Sounder Model: SES-5000	SAMYUNG 미상	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41-5 감천항 내에 정박 중인 ‘냉동화물선(보스톡리퍼 : VOSTOK REEFER : 1,068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선박강제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선박의 명칭	국제해사기구 번호(IMO)	호출부호	건조일자	건조국가	주요치수(단위: m)		
					길이	너비	깊이
보스톡리퍼 (VOSTOK REEFER)	8403961	UBYH6	1984	일본	56.19	10.30	6.80
	선박의 종류	선박국적	선적항	선질	총톤수 (G/T)	순톤수 (N/T)	적화톤수 (DWT)
	냉동화물선 (Reefer Ship)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강	1,068	351	-
Main Engine		Qty	제작소 제작일자	Auxiliary Engine	Qty	제작소 제작일자	
1,432KW(1,900Ps) (Model : 6M 34AFT)		1	NIIGATA 1984	-	2	NIIGATA 1984	
정박지 또는 보관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41-5 감천항 내 정박중						
선박사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실지조사 및 기준시점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 제2항 규정에 따라 대상 물건에 대한 가격조사완료일자인 **2026년 01월 06일**로 하였음.

나. 실지조사 및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6년 01월 06일자로 대상물건의 실지조사를 완료하였음.

3. 기준가치

가.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4. 감정평가방법

가. 관련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개별로 평가하고, 동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음.

- ①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 ② 비교방식 :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 ③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임.

2) 선박의 감정평가방법

선박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되,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으며, 선박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함.

- ① 원가법 :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②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임.
- ③ 해체처분가격: 선박이 원래의 용도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폐선처리할 경우 발생할 자재(고철)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임.

다. 선박의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조, 용재, 시공정도 및 규격, 선형, 형식, 용량과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체, 기관, 의장품별로 구분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

감가수정은 정률법을 적용하되 제작자 및 제작일 미상인 품목은 현상 및 관리상태, 장래 사용가능년수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본건 선박은 물건의 특성상 선박의 용도, 의장품의 성능, 수선 및 개조 등이 선박별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비교방식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된 방법 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7. 선박 감정평가 요항

(1) 선체의 현황

본 선박의 선체는 일본 니이가다(JAPAN NIIGATA)에서 1984년 05월 09일에 진수된 1,068G/T급 강조 기선(냉동화물선)으로서, 경제적 내용년수는 초과하였으며, 현상 및 관리상태는 대체로 보통 정도로 보임.

(2) 기관의 현황

본 선박에 설치된 기관은 NIIGATA에서 1984년 제작된 Diesel Engine 1,432KW(1,900PS) 1기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의장품의 현황

본 선박에 설치 및 비치된 의장품은 본선 운항 및 작업, 안전, 하역 등에 필요한 장비(양묘 및 계선장치, 항해 및 통신설비, 조타설비, 구명설비, 기관실내 보조기계류, 크레인 및 냉동설비, 펌프류 등)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 정도임. / 대부분 정상 작동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상태는 보통 정도임..

(4) 운항사항

본 선박의 선적항은 블라디보스톡이며, 경매진행으로 인하여 운항중단된 상태임.

(5) 실사장소

본 선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41-5 감천항 내에 정박 중인 상태이며 현지에서 실사하였음.

(6) 기타참고사항

본 선박은 냉동화물선으로서, 의장품 목록은 별도 제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모터, 펌프류, 배관류, 냉동에 관련된 설비 및 기타 의장품 등은 선체 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7) 검사에 대하여

검사유효기간은 2027.02.27.까지이며 매년 검사 승인조건임.

8. 기타 사항

- (1) 본건 선박은 러시아국적의 선박으로서 목록표시는 귀 제시목록 및 본 선박에 비치된 서류, 탐문조사 등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2) 본건 선박은 일반적인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였으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본건 선박의 각종 장비류는 정상적인 작동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운항, 정상적인 가동 및 사용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향후 경매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 (4) 본건 선박의 의장품은 본선 운항 및 작업, 안전 등에 필요한 장비로서, 의장품목록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 각종 모터 및 펌프류, 배관류, 보일러, 냉동관련 설비, 운반설비, 구명기구, 조타실내 각종 기구, 기타 의장품 등을 현장조사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품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이들은 모두 선체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대상물건의 개요

(선박원부 등 기준)

선박의 명칭	국제해사기구 번호(IMO)	호출부호	건조일자	건조국가	주요치수(단위: m)		
					길이	너비	깊이
보스톡리퍼 (VOSTOK REEFER)	8403961	UBYH6	1984	일본	56.19	10.30	6.80
	선박의 종류	선박국적	선적항	선질	총톤수 (G/T)	순톤수 (N/T)	적화톤수 (DWT)
	냉동화물선 (Reefer Ship)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강	1,068	351	-
Main Engine		Qty	제작소 제작일자	Auxiliary Engine	Qty	제작소 제작일자	
1,432KW(1,900Ps) (Model : 6M 34AFT)		1	NIIGATA 1984	-	2	NIIGATA 1984	
정박지 또는 보관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41-5 감천항 내 정박중						

2. 선박 가격결정의 참고사항

· 선박신조단가(G/T)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년]

선 종	구 분	신조단가(G/T)
		신톤수기준
유조선 및 화물선	500G/T 미만	3,500,000~5,000,000원
	500~1,000G/T	2,800,000~4,000,000원
	1,000~3,000G/T	2,700,000~3,800,000원
	3,000~10,000G/T	1,500,000~3,200,000원
	10,000~20,000G/T	1,200,000~1,900,000원
	20,000~60,000G/T	700,000~1,500,000원
	60,000G/T 이상	500,000~900,000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상선의 신조단가(CBM/TEU/DWT)-(2023.1.1. 기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년]

상선 유형	규 모 (CBM/TEU/DWT)	단가(\$, CBM/TEU/DWT)
Liquefied GAS Carrier	18,000~31,000CBM	1,700~2,600
	40,000CBM	1,080~1,350
	86,000~98,000CBM	750~1,150
	174,000~180,000CBM	1,000~1,200
Container Carrier	1,000~2,800TEU	13,290~44,050
	5,500~9,000CTEU	14,100~28,400
	11,400~28,000TEU	6,800~13,210
	77,000TEU	1,580
	130,000~150,000TEU	730~920

※CBM(Cubic meter,m³):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부피

※TEU(Twenty foot Equivalent Units):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단위 용적

※DWT(Dead 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수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

(2) 선박신조단가(기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23년]

구 분		신조단가(PS 당)	
주 기 관	Marine Diesel Engine	고속	147,000~275,000원
		중·저속	367,750원 이하
보조기관	Marine Diesel Engine	국산 고속	88,000~184,000원
		외산 중·고속	169,000~250,000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선박 및 기관의 재조달원가 결정

선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체·기관·의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 대상선박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되, 감가수정은 매년 체감하는 선박의 잔존가치에 일정한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정률법”에 의하였으며 -

선박의 선체 및 기관의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에 있어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으로, 선박의 각기 상이한 선형과 규모·구조·성능 등에 대한 정확한 신조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바, 선박의 선체 및 기관의 신조단가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및 평가사례 등과 평가대상 선박의 선형, 규모, 구조, 설비 등 시공상태와 사용목적으로서의 적합성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음.

- 1) **선체**: 본 선박은 기선(냉동화물선)으로서, 상기 유조선 및 화물선(1,000~3,000 G/T)을 준용하되, 물가변동률, 건조당시의 환율, 조선시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2) **기관**: 본 선박의 주기관은 NIIGATA에서 제작된 1,432KW(1,900PS) 디젤 1기로서, 상기 자료의 주기관 중·저속을 준용하되, 대상기관의 마력 및 회전수, 축계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구 분	재조달원가	비 고
선체	4,000,000원/톤	3,000~10,000G/T준용, 의장품을 포함.
기관	500,000원/KW	중·저속 준용.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가수정

(1) 내용연수표

-한국감정원(선박신조단가, 2010.12.)

설비의 종류	세목	내용연수
화물선(강조), 유조선(강조), 예인선(강조), 화물선(일반화물선, 전용화물선, 냉동화물선), 유조선(화학제품 운반선)	선체	20~25
	기관	20

·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선질별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선	25	20
F.R.P.선	20	10
목선	15	10

-한국감정평가사협회(2025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 자료집, 2025)

표준산업코드	기타운송장비	선박 및 보트 건조 장비	대표 내용연수
31100	제조업	철강 및 플라스틱 소재의 여객선, 화물선, 어선, 유조선, 특수선박	10~17

(2) 내용연수 결정 등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 하는 작업을 말하며, 감가수정방법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과 관찰감가법 등이 있는바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본건의 감가수정은 매년 체감하는 선박의 잔존가치에 일정한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정률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체 및 기관은 유효 경제적 잔존년수가 초과하여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 1) **선체**: 상기 재조달원가(3,000,000원/톤)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내용년수를 25년으로 하되 1984년에 건조되어 유효 경제적 잔존년수는 모두 경과하였으나, 현상과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잔존년수를 5년으로 하여 잔존가치율 20%를 기준으로 정률법에 의해 감가수정하였음.
- 2) **기관**: 상기의 재조달원가(500,000원/KW)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내용년수를 20년으로 하되 1984년 제작되어 유효 경제적 잔존년수는 모두 경과하였으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잔존년수를 3년으로 하여 잔존가치율 10%를 기준으로 정률법에 의해 감가수정하였음.

구분	재조달원가 (원)	(총) 내용연수	실제 경과연수	경제적 잔존년수	잔존가치율		적용단가 (원/m ³)
선체	4,000,000	25	42	5	5/25	0.2759 (잔가율20%)	1,103,000
기관	500,000	20	-	5	5/20	0.178 (잔가율10%)	89,000

※ 잔존가치율 = 잔존내용연수/(총)내용연수

3) 의장품

본건 선박의 의장품은 목록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본선 운항 및 작업, 안전 등에 필요한 장비로서 - 각종 모터 및 펌프류, 배관류, 보일러, 냉동관련 설비, 운반설비, 구멍기구, 조타실내 각종 기구, 기타 의장품 등을 현장조사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품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선체에 포함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감가수정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함.

선체와 기관은 정률법으로 감가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음.

본건의 경우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정률법을 적용하되 경과년수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음.

4. 원가법에 의한 선박가액 결정

기 호	선박명	구분	재조달원가 (단가)	잔존 가치율	적용단가	수량(단위)	감정평가액(원)
1	보스톡리퍼 (VOSTOK REEFER)	선체	4,000,000	0.2759 (5/25)	1,103,000	1,068G/T	1,178,004,000
		기관	500,000	0.178 (5/20)	89,000	1,432KW	127,448,000
		의장품	선박의장품명세표 참조.			34점	선체에 포함평가
합 계		-					1,305,452,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유사선박의 평가전례

평가 사례 ①	선박명칭		나우타(NAUTA)	선종	냉동화물선
	선박번호		8812796(IMO)	진수일자	1990.05.
	평가목적		경매	기준시점	2020.01.08.
평가금액		선체	4,190G/T	3,600,000×0.3347(10/25)관찰감가	
		기관	3,353KW	500,000×0.251(8/20)관찰감가	
		의장품	47점	선체에 포함	
		합계	₩5,463,885,000.-		

평가 사례 ②	선박명칭		카이사르(NKAESAR)	선종	냉동화물선
	선박번호		8835968(IMO)	진수일자	1990.
	평가목적		경매	기준시점	2022.10.19.
평가금액		선체	683G/T	4,500,000×0.3347(8/25)관찰감가	
		기관	589KW	500,000×0.251(8/20)관찰감가	
		의장품	29점	선체에 포함	
		합계	₩1,102,223,000.-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APA HUB]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평가 사례 ③	선박명칭	알라이드(ALAID)	선종	냉동화물선
	선박번호	8819287(IMO)	진수일자	1991.
	평가목적	경매	기준시점	2023.09.22.
평가금액	선체	5,084G/T	2,700,000×0.251(8/20)관찰감가	
	기관	4,045KW	400,000×0.251(8/20)관찰감가	
	의장품	52점	선체에 포함	
	합계	₩3,846,368,000.-		

평가 사례 ④	선박명칭		넵툰(NEPTUN)	선종	냉동화물선
	선박번호		8710209(IMO)	진수일자	1988.
	평가목적		경매	기준시점	2025.07.25.
평가금액		선체	4,939G/T	2,700,000×0.2759(5/25)관찰감가	
		기관	5,150KW	500,000×0.141(3/20)관찰감가	
		의장품	54점	선체에 포함	
		합계	₩4,035,116,000.-		

평가 사례 ⑤	선박명칭		머큐리(MERCURY)	선종	냉동화물선
	선박번호		8216916(IMO)	진수일자	1983.
	평가목적		경매	기준시점	2025.07.24.
평가금액		선체	5,874G/T	2,700,000×0.2426(3/25)관찰감가	
		기관	5,884KW	500,000×0.141(3/20)관찰감가	
		의장품	54점	선체에 포함	
		합계	₩4,259,35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상기 평가사례는 냉동화물선으로서, 평가목적 및 용도, 선체 현황, 주기관 및 의장품의 종류, 선박수리 및 개보수여부, 관리상태 등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으며, 또한 진수일 대비 선박가액의 차이도 있으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Ⅲ.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선명	구 분		규격 및 용량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보스톡리퍼 (VOSTOK REEFER)	선박	선체	1,068G/T	1,103,000	1,178,004,000	관찰감가
		기관	1,432KW	89,000	127,448,000	관찰감가
		의장품	34점	-	선체에 포함	의장품명 세표참조
합 계					1,305,452,000	

2. 결정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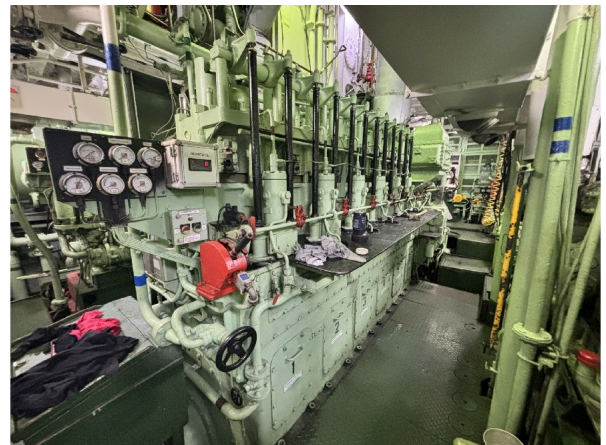
대상 선박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사선박의 가격수준, 대상 선박의 제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체, 기관, 의장품별로 구분하여 원가법으로 하되, 선박은 거래사례 및 수익사례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고 주된 방법인 원가법으로 대상 선박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끝.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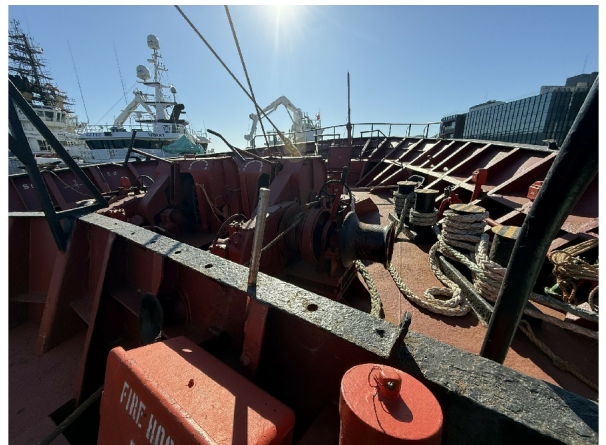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441-5 감천항 내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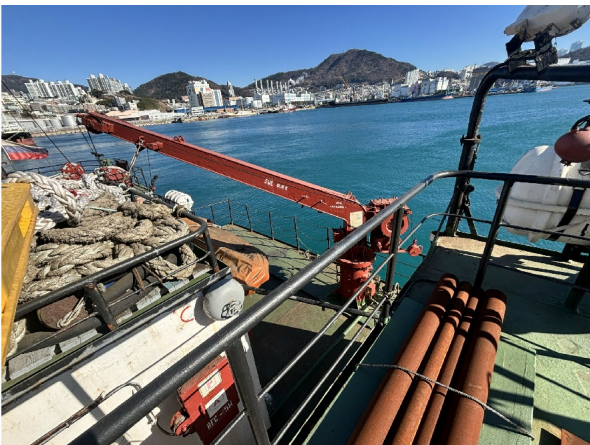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